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pr@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주요 법안 동향

법안 종류	키워드	주요 법안	주요 내용
발의안	조세	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시 △지방 이전 기업 전용 산업단지 조성 지원 △주택공급 및 주택구입자금 용자 등 근로자의 이주 지원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등의 지원 근거를 규정.
	에너지인프라	②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능평가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성능평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한 자동차 제작자 등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
국회 계류안	행정/노무	③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한 노조의 단체교섭·쟁의 행위에 대해 노조나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법 적용 대상을 하청과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으로 확대하도록 함.
공포 법령	기업송무	④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시설물의 관계자가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입법/행정예고	기업금융	⑤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의 자회사 업무 추가·변경 행위와 더불어 허위, 부실, 지연 손해사정 등 손해사정사의 금지 행위 위반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

1. 발의

*각 법률안 및 검토보고서 확인을 위해서는, 법률안 밑에 있는 링크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제안자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진행 경과
1	 김정재 (국민의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법은 지역 간 발전의 기회균등 등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2년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조사 결과 기업들은 지방 이전에 필요한 사항으로 인력 확보 지원, 세제 혜택 및 설비투자, 사업장 부지 제공이 높게 나타났으나, 현행법에 따른 지원인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미흡하고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지원 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에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시 산업단지 조성 지원, 정주여건 개선 지원의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p>출처: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W2W2S0B9K0K2D1X5J4P2A0U2Y3J2J5</p>	세계일보 23.01.06. 김정재 의원, 지방 이전 수도권기업 지원법안 대표발의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105517797	23.01.04. 제안

번호	제안자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진행 경과
2	 <p>이주환 (국민의힘)</p>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기차, 수소차 등 운행단계에서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무공해자동차는 대기환경 개선 및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수단으로, 세계 주요국과 유수의 자동차 기업들은 무공해자동차로의 전환에 나서고 있음. 우리나라도 그동안 구매보조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충전시설도 신속히 확충하는 등 무공해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펼쳐왔고, 그 결과 무공해자동차와 충전시설이 도입 초기단계를 넘어 최근 급증 추세에 있으나, 무공해자동차로의 전환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제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는 환경적으로 우수한 자동차를 보급하고 그 운영을 지원·관리하는 내용이 저공해자동차 중심으로 규정되어있어, 무공해자동차 정의, 보조금 관리 등에 대한 법적 기반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무공해자동차 중심 저공해자동차 보급 정책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공해자동차의 한 종류로서 무공해자동차의 정의를 신설하는 한편, 보조금 지원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성능평가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성능평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한 자동차 제작자 등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여 성능평가를 내실화하는 등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무공해자동차’의 정의를 법률로 상향입법하여 그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2조). 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성능평가를 받거나, 성능평가의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한 자동차 제작자 등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함(안 제58조의2제2항 신설). 다.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 미승인 시 제재 수준을 당초 벌금에서 과태료로 완화함(안 제94조). <p>출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I2X2J1T2L0Q5P1L5G2R0N2Q5I2T6H3</p>		23.01.03. 제안

2. 국회 계류안

번호	제안자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진행 경과
3	 <p>이은주 (정의당)</p>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법은 근로자 및 사용자 개념에서 고전적인 1:1의 노사관계를 상정하고 있어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면책규정이 유명무실화되고,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어 노동쟁의의 범위가 협소하고, 쟁의행위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적 손해에 대한 민사면책의 인정 요건 또한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로 좁게 한정하여 노조활동이 제약되거나 노동조합 및 근로자가 생계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음. 아울러, 노조행위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배상청구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그 금액에 상한이 없어 노동조합의 활동이 위축되는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근로자, 사용자, 노동쟁의의 정의 규정을 수정하고,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확대하며,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금지하는 등 조항을 개정 및 신설하여 개인 등에 대한 불합리한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헌법이 보장한 권리인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규정하여, 노동관계법상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를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시킴(안 제2조제1호). 나.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수행업무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 그 사업의 노동조합에 대하여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 자는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사용자에게 해당한다고 규정하여,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 이외에 노동관계법상 사용자에게 해당하는 자의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2조제2호). 	<p>경향신문 23.01.06. 노동계 “인권위도 인정한 노란봉투법, 국회는 시급히 처리해야”</p> <p>https://www.khan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1061432001</p>	<p>22.09.14. 제안</p> <p>22.11.17. 상임위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p> <p>22.11.30. 소위 상정/ 축조심사</p> <p>22.12.07. 소위 상정/ 축조심사</p> <p>22.12.26. 소위 상정/ 축조심사</p>

번호	제안자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진행 경과
			<p>다. 노동쟁의를 근로조건 및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로 규정하여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범위를 넓힘(안 제2조제5호).</p> <p>라.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하고는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행위(이하 “쟁의행위등”이라 한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특히 그 쟁의행위등이 노동조합에 의하여 계획된 것이라면 개별 근로자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신설).</p> <p>마. 「신원보증법」에도 불구하고 쟁의행위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신원보증인이 책임지지 않도록 하고, 사용자의 영업손실, 사용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또는 그 밖의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발생한 것이 아닌 손해도 노동쟁의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함(안 제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p> <p>바. 쟁의행위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존립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조합원수·조합비·노동조합의 재정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p> <p>사. 손해배상의 배상무자는 법원에 감면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쟁의행위의 원인과 경과, 배상무자의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하여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3 신설).</p>		

출처: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2J2K0D8U1G2M1T0X0W7L1F4H8K1J4

3. 공포 법령

번호	소관부처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일자
4	소방청	위험물안전관리법	<p>■ 석유 저장시설 등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 화재 등 재해를 예방하고 위험물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험물 제조소 등의 소유자·점유자 등이 정하는 자체 안전매뉴얼인 예방규정의 이행 실태를 소방청장이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제조소 등의 소유자·점유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종전에는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저장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에만 처벌하였으나,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에서 위험물 유출 등으로 인명피해 등을 발생시킨 경우 불법의 정도가 더 큰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 위험물 유출 등으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에도 이 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p> <p>출처:https://www.law.go.kr/법령/위험물안전관리법/(19161,20230103)</p>	<p>파이낸셜뉴스 23.01.02. 위험시설물 관리·감독 강화… 예방규정 어기면 500만원 과태료</p> <p>https://www.fnnews.com/news/202301021813521808</p>	<p>23.01.03. 일부개정</p> <p>23.07.04. 시행</p>

4. 입법/행정 예고 법령

번호	소관부처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예고기간
5	금융위원회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영업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경직적 제재를 합리화하고, 감독당국의 제한된 인력으로 신속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민원 등 분야에 대해 보험협회 등 민간영역에서 역할을 분담하는 개선을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전속설계사 교차모집 제도 완화(안 제85조) 보험설계사가 본인이 전속된 회사의 자회사 상품도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 나. 보험설계사에 대한 제재 합리화 (제86조, 제136조) 업무정지·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설계사를 등록취소하는 가중제재의 기산점을 5년으로 두고, 경미한 법규위반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등 경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다. 보험협회의 일반민원 처리 허용 (제175조) 보험계약 관련 단순질의, 보험회사간 자율조정 사항 등 일반민원을 보험협회에서 상담·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p>헤럴드경제 23.01.09. 보험 손해사정 불공정 행위에 과태료 물린다</p> <p>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109000062</p>	23.01.06. ~ 23.02.15.

번호	소관부처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예고기간
			<p>라. 기초서류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제196조) 기초서류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으로 과징금 부과대상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부당이득금액에 비례하여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부과기준도 합리화</p> <p>마. 책임준비금 과다적립에 대한 과태료 부과 면제 (제209조제1항제10호의2) 보험회사 과실에 따른 책임준비금 과다적립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p> <p>바. 실효성 없는 금지규정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제209조제1항제8호의2, 제7항제18호) 보험회사의 자회사 업무 추가·변경 행위 및 허위·부실·지연 손해사정 등 손해사정사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p> <p>출처: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71596</p>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기사

[조선일보][기사]'중대재해 0건' 포스코건설, 전직원 200만원 지급(2023.01.10.)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3/01/10/G6MHKOCDSVA4BMIVMDYM3CO3VY/?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주요내용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현장에서 중대 재해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 전 직원에게 안전 인센티브를 200만원씩 지급했다고 밝힘. 포스코건설은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21년부터 '무재해 달성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는데, 상하반기로 나누어 중대 재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모든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하여, 총 200만원을 지급함. 포스코건설 측은 지난해 국내 10대 건설사 가운데 유일하게 건설 현장에서 사망 사고 같은 중대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힘.

[매일경제][기사]'중대재해 안전감독' 2월부터 조기 시행(2023.01.10.)

<https://www.mk.co.kr/news/politics/10601382>

주요내용 정부가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를 감축하기 위해 올해 위험성평가 제도를 도입한 가운데 정기감독 일정을 앞당기기로 함. 위험성평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해 개선 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제도. 정치권에선 더불어민주당이 건설안전특별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나서면서 경영계 반발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됨.

[헤럴드경제][기사]'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 3분기까지 구축...중대재해법도 개정(2023.01.09.)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109000674>

주요내용 고용노동부는 경영계를 중심으로 보완 요구가 제기돼 왔던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섬.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도 추진됨.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해 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제도인 '위험성 평가'를 핵심 산업재해 예방 수단으로 확립하겠다고 함. 위험성 평가를 올해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5인 이상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방침.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보겠다는 것. 특히 고용부는 전문가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오는 27일이면 시행 1년을 맞는 중대재해처벌법 성과를 평가하기로 했음.

[매일신문][사설] 중대재해처벌법 1년, 산재는 안 줄고 논란만(2023.01.06.)

<https://news.imaeil.com/page/view/2023010618022269844>

주요내용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을 앞두고 있지만 법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음. 노동계는 유명무실한 중대재해법을 강화하고 정부가 더 책임 있게 수사해야 한다며 주장하고, 재계는 기업 활동만 위축시키는 악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등, 이 법은 양쪽으로부터 공격받고 있음.

이 법이 지닌 근본적 문제점은 '과실 책임'이 아니라 '결과 책임'을 묻는다는 데 있음. 법이 제시하는 안전 의무 준수 기준은 불명확하고 기업 현장의 이해도가 낮음.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본연 취지를 살리기보다 기업인의 막연한 두려움부터 유발하다보니 법에 대한 저항이 생기게 됨. 처벌이 아니라 재해 예방에 중점을 맞춰 법을 손질하고 제도도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음.

담당 변호사 및 전문인력

입법전략센터



차동연
파트너변호사

T : 02-3016-8720
E : decha@draju.com



박민재
공동센터장
파트너변호사

T : 02-3016-8717
E : parkmj@draju.com



최원혁
변호사

T : 02-3016-8737
E : whchoi@draju.com



권기원
공동센터장

T : 02-3016-8743
E : gwkwon@draju.com



이승철
고문

T : 02-3016-8706
E : sclee@draju.com

조세그룹



이규철
대표변호사

T : 02-3016-5335
E : kcllee@draju.com

에너지인프라팀



박미현
외국변호사

T : 02-3016-8731
E : mmpark@draju.com

행정/노무팀



김광수
파트너변호사

T : 02-3016-7405
E : kskim2@draju.com

기업송무그룹



김수형
파트너변호사

T : 02-563-2900
E : shkim@draju.com

기업금융그룹



김인진
파트너변호사

T : 02-3016-8761
E : kij@draju.com

중대재해자문그룹



김영규
파트너변호사

T : 02-3016-8723
E : ykkim2@draju.com